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세무총국****일부 소기업 증치세 및** **영업세 징수 임시면제 정책** **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**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49호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, 《재정부, 국가세무국의 일부 소기업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 임시면제에 대한 통지》(재세[2013]52호, 이하 ‘《통지》’)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**1.** 《통지》 중 “월 판매액이 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”, “월 영업액이 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”는 월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2만 위안 이하(2만 위안 포함, 이하 동일)인 경우를 의미한다. 월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, 증치세 또는 영업세를 전액 계산하여 납입해야 한다. **2.** 1개 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하는 증치세 소규모납세인 및 영업세 납세인 중, 분기 판매액 또는 영업액이 6만 위안 이하(6만 위안 포함, 이하 동일)인 기업 또는 비기업성 단위는《통지》규정에 따라, 증치세 또는 영업세의 징수를 임시면제 받을 수 있다. **3.** 증치세 소규모납세인 중, 기업 또는 비기업성 단위가 영업세 과세대상항목을 겸업하는 경우, 증치세 과세대상항목의 판매액 및 영업세 과세대상항목의 영업액을 구분하여 각각 결산해야 하며, 월 판매액이2만 위안(분기별로 6만 위안 납세)이하인 경우, 증치세 징수를 임시면제 할 수 있으며, 월 판매액이 2만 위안 (분기별로 6만 위안 납세) 이하인 경우, 영업세 징수를 임시면제 한다. **4.** 증치세 소규모납세인 중, 기업 또는 비기업성 단위의 월 판매액이 2만 위안 이하인 경우(분기별로 6만 위안 납세), 당기에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(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포함) 및 보통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고 기납부한 세액은 세금계산서 전체 련차(联次)를 추징 후, 주관세무기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.**5.** 본 공고는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.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.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 국가세무총국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2013년 8월 21일 |  | **国家税务总局****关于暂免征收部分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****政策有关问题的公告**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49号　　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发展，现将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暂免征收部分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的通知》（财税〔2013〕52号，以下简称《通知》）有关问题公告如下：　　一、《通知》中“月销售额不超过2万元”、“月营业额不超过2万元”,是指月销售额或营业额在2万元以下（含2万元，下同）。月销售额或营业额超过2万元的，应全额计算缴纳增值税或营业税。　　二、以1个季度为纳税期限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和营业税纳税人中，季度销售额或营业额不超过6万元（含6万元，下同）的企业或非企业性单位，可按照《通知》规定，暂免征收增值税或营业税。　　三、增值税小规模纳税人中的企业或非企业性单位，兼营营业税应税项目的，应当分别核算增值税应税项目的销售额和营业税应税项目的营业额，月销售额不超过2万元（按季纳税6万元）的暂免征收增值税，月营业额不超过2万元（按季纳税6万元）的，暂免征收营业税。　　四、增值税小规模纳税人中的企业或非企业性单位，月销售额不超过2万元（按季纳税6万元）的，当期因代开增值税专用发票（含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）和普通发票已经缴纳的税款，在发票全部联次追回后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。五、本公告自2013年8月1日起执行。　　特此公告。　　国家税务总局　　2013年8月21日 |